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93
------------	-------

발의연월일 : 2019. 12. 30.

발 의 자 : 이만희 · 추경호 · 정종섭

최교일 · 최연혜 · 원유철

김정재 · 강석진 · 김광림

김승희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계획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효과 뿐만 아니라 목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개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필요성과 개발 효과”를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u>필요성과 개발 효과</u></p> <p>4. ~ 9. (생 략)</p>	<p>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목 <u>효과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u></p> <p>4. ~ 9. (현행과 같음)</p>